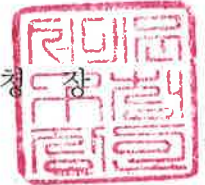
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06호(1974.08.01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고 제2019-356호(2019.03.28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「홍제3동 문화촌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」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『같은 법』 제91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2.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3.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

2019년 4월 18일

서 대 문 구 청 장

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7-26 ~ 8-77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- 명칭 :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 주변 도로확장

다. 사업의 규모 : 도로개설(폭 6m, 연장 256m)

라. 사업 시행자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[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]

마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별첨

사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의함

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(전화 : 330-176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